

의안 번호	제3285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9월 15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3년 9월 15일

2. 제안이유

- 통진읍 신청사 건립에 따라 구청사 ‘나’ 동을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센터가 수탁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 설치 근거 신설(안 제2조)
- 나.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기능 추가(안 제4조)
- 다. 그 밖에 “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·띄어쓰기 등 정비

4. 검토의견

-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의 이행 차원에서 시의회 주문사항(제196회, 제198회 임시회)으로 ‘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’ 을 ‘해당 예산안’ 보다 앞선 회기에 제출할 것을 누차 당부하였으나,
-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 관련 예산[김포시상호문화 교류센터(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) 운영, 93,118천원]을 이미 편성한 후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적 선후관계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검토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